겸임교원 신규채용 운영세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영진사이버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교원임용규정 제10조에 따른 겸임교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채용계획) 교무학생처장은 각 계열부장・학과장이 제출한 겸임교원채용계획서를 검토한 후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다.

제3조(채용전형) 겸임교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채용공고) 겸임교원의 신규채용 공고는 임용분야, 임용인원, 지원자격,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본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고한다.

제5조(제출서류)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겸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서
2. 이력서
3. 자기소개서
4. 대학 및 계열/학과 발전 계획서
5. 연구실적 목록(연구실적 요약문)
6. 학력(학위)증명서(전문학사, 학사, 석사, 박사)
7. 지원서 상의 경력증명서
8.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서류

② 경력 및 업적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.

제6조(심사기구 구성) ① 신규 겸임교원 임용은 해당 계열・학과에서 겸임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심사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계열부장・학과장으로 한다. 다만, 계열부장・학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계열부장・학과장이 전임교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본 대학 전임교원과 외부인사를 위원에 포함하여 구성한다.

제7조(신규채용 절차) 각 계열・학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규임용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.

1. 계열・학과에서는 채용분야, 인원, 지원자격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겸임교원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학생처로 송부한다.
2. 교무학생처장은 채용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여 겸임교원채용계획을 수립 후 확정한다.
3. 제4조에 따라 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한다.
4. 위원회는 지원자의 교육자적 자질, 연구 및 교육경력, 학문분야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,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
5. 겸임교원임용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검증・심의하고 총장

이 임용한다.

6. 임용이 확정된 겸임교원이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심사 성적 등에 따라 임용후보자 순위대로 선발할 수 있으며,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경우 차 순위 자를 임용할 수 있다.

7.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재추진하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제8조(신규채용심사) ① 심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1. 서류심사 : 지원자의 자격기준 등 심사
2. 전공심사 : 지원자의 학력, 교육경력, 산업체경력과 채용분야의 전공적합성 심사
3. 면접심사 : 지원자의 교육자적 품성과 태도 및 교육 역량 심사

② 위원회는 ①항의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의 겸임교원 신규임용 평가표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배점과 세부항목은 조정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총점수순에 따른 임용 예비 순위를 정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9조(임용)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 대상자에 대해 검증・심의를 실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.

제10조(임용유보)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유보할 수 있다.

1.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 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
2. 계열・학과 및 대학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그 밖에 겸임교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

제11조(임용취소)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겸임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2조(차 순위자 임용) 신규임용이 확정된 겸임교원이 매학기 시작일 전까지 또는 학기 중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차 순위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13조(비밀유지 의무) 겸임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.

제14조(준용) 이 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지침이나 「고등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 및 본 대학의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